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1
----------	----

발의년월일 : 2006. 10.

발 의 자 : 김성숙 의원외 21인

□ 개정이유

- 생활체육은 시책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일부로 정착되도록 추진되어야 함.
-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선용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함(안 제13조)
 -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선수 및 팀은 훈련계획에 의하여 훈련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감면함.
 - 시 단위의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함.
 -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조직이 개최하는 경기 및 체육활동 등 행사 5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감면함.
- 사무권한의 위임을 폐지(안 제24조)
 -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문학경기장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던 것을 폐지함.

□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 및 발체사항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인천광역시체육회 및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인천광역시체육회 및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의 훈련계획에 의하여 훈련하는 경우
3. 시 단위의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

③다음 각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2.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조직이 개최하는 경기 및 체육활동 등 행사

④다음 각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2. 기타 체육진흥 및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2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p> <p>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인천광역시 체육회에 등록된 선수 (팀을 포함한다)로서 인천광역시 체육회의 훈련계획에 의하여 훈련하는 경우 3.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4. 어린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5. 기타 체육진흥 및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p>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p> <p>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p> <p>②다음 각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인천광역시체육회 및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인천광역시체육회 및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의 훈련계획에 의하여 훈련하는 경우 3. 시 단위의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 <p>③다음 각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p>

1.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2.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조직이 개최하는 경기 및 체육활동 등 행사

④다음 각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2. 기타 체육진흥 및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전액 면제할 수 있으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제4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24조(사무권한 위임)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따른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문학경기장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삭제 >

< 삭제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문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 계 법 령

□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립 송의종합경기장(육상경기장, 축구장), 시립송의야구장, 시립도원체육관, 시립도원수영장, 시립연희승마장, 시립가좌테니스장, 시립수봉궁도장, 시립계산궁도장, 시립옥련사격장, 시립수봉양궁장, 시립송의씨름장, 시립동춘롤러경기장, 시립문학경기장, 시립문학야구장, 시립문학보조경기장 등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02-02-25>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0-07-22>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체육시설별로 별표2, 별표3에서 정한 인원이상이 단체인솔자에 의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입장권”이라 함은 체육시설별로 별표2, 별표3에서 정한 인원이상이

단체인솔자에 의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관람권”이라 함은 체육경기대회 및 기타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10.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07-22>
11.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00-07-22>
12.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을 포함한 하사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13. “어른”이라 함은 20세이상의 자를 말한다.
14. “노인”이라 함은 65세이상의 자를 말한다.
15. “체육경기”라 함은 학교 체육단체등에서 주최하는 순수한 체육경기를 말한다. <신설 1992-04-24>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성명·사용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 및 시간·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사용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

③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00-07-22>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이외의 공연·전람·전시 등 문화행사
7. 기타

②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한다.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시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 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고시한 후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시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삭제 1999-06-21>
4.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9조(사용 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조기 : 05:00 - 08:00까지 (동계 06:00 - 09:00까지)

주간 : 08:00 - 19:00까지 (동계 09:00 - 18:00까지)

야간 : 19:00 - 23:00까지 (동계 18:00 - 23:00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1,2,3,4,5,6,7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00-07-22>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사용, 시립도원수영장강습사용, 방송사용, 상업사용, 부대시설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개정 2002-02-25>

③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한다.

제11조(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초청장, 초대권 제외)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체육경기에 있어서는 제10조의 사용료 외에 관람권 대표액에서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수입액의 12퍼센트를, 프로경기 및 체육경기 외의 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의 사용료 외

에 관람권 매표액에서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수입액의 15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과 같은 무료관람권은 전체 관람권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고 무료관람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초과 발생분에 대하여는 일반관람권의 동일금액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02-02-25>

제12조(초과 사용료) ①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전용 사용시 : 초과 시간당 당해 체육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개정 2000-07-22>
2. 이용 사용시 : 초과 시간당 당해 체육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개정 2000-07-22>
3. 사용자가 조기·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의 초과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인천광역시 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인천광역시 체육회의 훈련계획에 의하여 훈련하는 경우
3.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4. 어린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5. 기타 체육진흥 및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전액 면제할 수 있으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제4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07-22>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100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②이용권,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권) ①체육시설에 입장할 때,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및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 <개정 2000-07-22>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체육관련 출입기자
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②체육시설 입장료는 별표8과 같다. <개정 1994-07-27>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의 처분에 의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철거요구를 하여야 하며 철거 요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철거치 아니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정한 예치금은 시에 귀속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및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에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 입장권은 당해 체육시설 매표구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0-07-22>

②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07-22>

③예매를 제외한 매표 및 모든 수표관리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자(주최측)가 한다. <신설 2000-07-22>

제24조(사무권한 위임)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따른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문학경기장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2-02-25>

제25조(위탁관리)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02-25>

②위탁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직할시공설운동장사용조례 (1953.11.5 조례 제7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2-04-24 조례 제2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7-27 조례 제2845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직할시공원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유희시설, 운동시설, 기타시설란의 사용기준, 금액, 비고란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운동시설의 사용료중 징수구장 전용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회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으로 본다.

부칙 <1999-06-21 조례 제3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7-22 조례 제3458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연간, 반기별,

분기별 및 월별로 사용허가를 받아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 ③ (관람수입 사용료에 관한 특례) 체육발전과 프로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1조의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는 2001년12월31일까지 체육경기는 관람수입의 12퍼센트를, 프로경기는 관람수입의 15퍼센트를 징수한다.

부칙 <2002-02-25 조례 제3576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사무권한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된 사무권한은 인천광역시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2항(기구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개시일 전일까지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 처리한다.

[별표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구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비 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시립송의종합 경기장	육상장	40,000	60,000	110,000	17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프로경기는 체육경기의 적용 • 시립동춘롤러경기장, 시립가좌테니스장, 시립문학경기장, 시립문학보조경기장의 야간사용료는 주간의 50퍼센트 가산
	축구장	70,000	100,000	170,000	210,000	
시립송의야구장	주간	40,000	70,000	110,000	140,000	
	야간	60,000	80,000	130,000	170,000	
시립도원수영장	주간	200,000	300,000	400,000	600,000	
	야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시립도원체육관	주간	60,000	70,000	200,000	280,000	
	야간	70,000	100,000	280,000	390,000	
시립동춘롤러경기 장	스피드스 케이트장	70,000	90,000	90,000	110,000	
	피겨스케 이트장	50,000	70,000	70,000	90,000	
	하키장					
시립가좌 테니스장	주간	20,000 (면당)	25,000 (면당)	35,000 (면당)	45,000 (면당)	
시립문학경기장	육상장	40,000	60,000	110,000	170,000	
	축구장	70,000	100,000	170,000	210,000	
시립문학야구장	주간	40,000	70,000	110,000	140,000	
	야간	60,000	80,000	130,000	170,000	
시립문학보조경기장	주간	40,000	60,000	110,000	170,000	

[별표2]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간	1인당 사 용 료				비 고
			개 인	단 체	월회원	월강습	
시립가좌테니스장		1회 1시간	1,000	3,000 (면당)	30,000	6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는 동일 소속팀10인 이상으로 함. (시립도원수 영장제외) · 롤러스케이트 대여료는 1,000원 (동일기준) · 테니스장에 한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이용요금의 50퍼센트 감면
시립동춘롤러경기장		주간	일반	일반	일반		
			1,500	1,200	30,000		
			군인· 청소년	군인· 청소년	군인· 청소년		
			1,000	700	20,000		
시립동춘롤러경기장		야간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600	500	12,000		
			일반	일반	일반		
			2,000	1,500	40,000		
시립옥련 사격장		1회 2시간	700	400			
							실내
		크레이	1라 운드	8,000			
시립연희승마장		1회 2시간	4,000	3,000	140,000		
시립수봉양궁장		1회 2시간	2,100	1,400	20,000		
시립수봉궁도장		1회	1,400	1,000	14,000		
시립계산궁도장		2시간					

[별표3]

시립도원수영장 입장료

(단위 : 원)

입장자구분		입장료	비고
	일반	2,000	· 단체는 동일소속 20인이상으로 함 · 회원이라 함은 1개월간 입장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노인은 경로우대증 소지자를 말함 ·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는 입장요금의 50퍼센트 감면
	군인·청소년	1,500	
	노인·어린이	1,300	
단체	일반	1,600	
	군인·청소년	1,300	
	노인·어린이	1,000	
회원	일반	38,000	
	군인·청소년	32,000	
	노인·어린이	19,000	

[별표4]

시립도원수영장강습료

(단위 : 원)

입 장 자 구 분	강습료	비고
일 반	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습시간은 1일1시간으로 하되 수영장에서 지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 강습료는 1개월 단위로 한다. (수영장입장료는 별도임)
군인 · 청소년	7,000	
노인 · 어린이	5,000	

[별표5]

체육시설 방송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T·V		라디오		비 고
			국제	국내	국제	국내	
중 계 방 송	체 육 경 기	시립송의종합경기장 시립송의야구장 시립도원체육관 시립도원수영장 시립가좌테니스장 시립동춘롤러경기장 시립문학경기장 시립문학야구장 시립문학보조경기장	40,000	30,000	20,000	1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 방송시설 사용료중 기본 사용은 앰프+마이크 1대로 하며 마이크 1대 추가시 3,000원추가
		체 육 외 행 사	70,000	60,000	30,000	21,000	
녹 화 촬 영	녹화 또는 녹음		중계방송의 반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 정보 중계료는 15,000원
	경기 또는 행사촬영		T·V중계방송과 동일				
전 기 료			관 허 료				
		시립도원체육관	기본사용료 : 40,000				
		시립송의종합경기장	기본사용료 : 80,000				
		시립송의야구장	기본사용료 : 70,000				
		시립도원수영장	기본사용료 : 50,000				
		시립가좌테니스장	기본사용료 : 70,000				
		시립동춘롤러경기장	기본사용료 : 70,000				
		시립문학경기장	기본사용료 : 80,000				
		시립문학야구장	기본사용료 : 70,000				
		시립문학보조경기장	기본사용료 : 60,000				

[별표6]

체육시설 상업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기준	요금	비고
영화등의 촬영행위 (운동장시설사용)	주간 야간	40,000 7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및 관람을 위한 문화행사 포함 · 현수막은 제곱미터당 1,400원 (1일 기준)
에드버튼 또는 유사물의 공간게양	1일 1개	7,000	
기타 게시 등의 부착광고물	1.2mm×8m 이내	(1년간) 공개경쟁입찰 (5일이내) 70,000 (1일초과) 7,000	

[별표7]

부 속 시 설 사 용 료

(단위 : 원)

구 분		요 금	비 고		
전 광 관	시립송의종합경기장 시립송의야구장 시립도원수영장 시립동춘롤러경기장 시립도원체육관 시립문학경기장 시립문학야구장		1일기본료(60,000)+(전광판주변 압기용량×기본요금×사용일수/ 30)+실제사용 전기관허요금	· 아마추어 경기 시는 기본료의 50퍼센트 감액	
	냉 난 방	전기	1일기본료(60,000)+(수용요금×사 용일수/30)+실제사용 전기관허 요금		· 야구장 전광판 및 타워 동시 사 용시는 전기수용 기본료 1개만 사 용
		LNG	연 료 비 (시간당 60,000)		
	천 정 조 명	시립도원체육관	1일기본료(60,000)+(수용요금×사 용일수/30)+실제사용 전기관허 요금		· 체육관 냉·난 방 및 천정조명 시설 동시 사용 시는 전기 기본 료 1개만 적용
	조 명 탑	시립송의야구장 시립문학경기장 시립문학야구장 시립문학보조경기장	1일기본료(60,000)+(수용요금×사 용일수/30)+실제사용 전기관허 요금		

[별표8]

체육시설 관람입장료

(단위 : 원)

구분	기준	요금	비고
입장료	1인1회	500	각종경기 및 행사의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수 (단, 주최측에서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 때)